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7. 9. 26.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9월 12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9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 9. 25.)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춘은)

가. 제안이유

- 2018년부터 구에서 직접 운영 예정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충원과 기준인건비 내 승인된 고용복지 인력을 확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1,402’를 ‘1,405’로 개정(증 3명)
  - 집행기관의 정원: ‘1,375’를 ‘1,378’로 개정(증 3명)
- 정원의 직급별 정원포 개정(별표 3)
  - 총계 ‘1,402’를 ‘1,405’로 개정(증 3명)
  - 일반직 총계 ‘1,397’을 ‘1,400’으로 개정(증 3명)

- 일반직 5급 총계 '64'를 '65'로, 보건소 '11'을 '12'로 개정(증 1명)
- 일반직 6급 이하 '1,322'을 '1,324'로 개정(증 2명)

기관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직급별						
총 계		1,405	1,405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00	1,400			
일반 직	3급	1	1	-	-	-
	4급	8	6	1	1	-
	5급	65	33	2	12	18
	6급 이하	1,324	1,324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목)

○ 본 개정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17.5.20.)에 따라, 2018년부터 구에서 직접 운영 예정인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분야 전문 인력(의사) 및 간호직을 정원 증원하고, 또한 고용복지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고용복지 분야 전담인력을 증원 하려는 것으로서,

○ 개정안의 주요내용(직급별 세부 증원 내용 참조)을 살펴보면,

※ 직급별 세부 증원내용

직급	증원	증원 필요성
계	3명	
5급 (임기제, 의무)	1명	○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접운영에 따른 증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8급 (간호)	1명	○ 정신건강사업 분야 수요 증대에 따른 증원
9급 (사회복지)	1명	○ 고용복지분야 수요 증대에 따른 증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 안 제2조, 본문의 개정사항은 공무원의 총 정원수는 현재1,402명에서 1,405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기준인건비 1,217억원 내에서 3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 안 제4조 “별표3”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안 제2조에서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직의 5급 1명, 6급이하 2명 등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 위와 관련하여, 신규증원에 따른 3명의 인건비 산출액은 연간 1억7천4백만 원으로서, 2017년도 우리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217억 원이고, 예산 편성액은 1,148억 원임을 감안할 때,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증원이 가능하겠지만, 향후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증가 추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7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 현황’ 참조)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 2017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 현황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 121,700,397천원

□ 영등포구 예산편성금액 : 114,895,871천원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총계	114,895,871
101 인건비	91,970,524
101-01 보수	73,482,627
101-02 기타직보수	5,270,292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217,605
204 직무수행경비	2,468,700
204-02 직급보조비	2,468,700
303 포상금	4,156,659
303-02 성과상여금	4,156,659
304 연금부담금등	16,299,988
304-01 연금부담금	13,596,757
304-02 국민건강보험금	2,703,2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66 호
----------	---------

제출연월일 : 2017.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2018년 1월 1일부터 영등포구에서 직접 운영 예정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과 기준인건비 내 승인된 고용복지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1,402'를 '1,405'로 개정(증 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75'를 '1,378'로 개정(증 3명)

나.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별표 3)

- 총계 '1,402'를 '1,405'로 개정(증 3명)
- 일반직 총계 '1,397'를 '1,400'로 개정(증 3명)
  - 일반직 5급 총계 '64'를 '65'로, 보건소 '11'을 '12'로 개정(증 1명)
  - 일반직 6급 이하 '1,322'를 '1,324'로 개정(증 2명)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1) 「지방자치법」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 제외대상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7.8.17. ~ 8.28. / 11일간) 결과 :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 세출예산 순증가 (인건비)
  - 정원조례 제2조 : 정원의 총수는 '1,402명'을 '1,40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1,375명'을 '1,378명'으로 한다
2. 비용추계 기준 : 일반직 인건비
  - 채용인원 : 3명(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 비용추계기간 : 12개월(2018.1.~12월)
  - 비용추계내역 : 기본급+직급보조비+국민건강보험금+연금부담금+수당
3.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합 계	174,404	
기본급(봉급)	96,071	5급(일반임기제, 의사)은 연봉 하한액 8급, 9급은 각 직급 3호봉 기준
직급보조비	7,800	직급보조비 7,800천원
국민건강 보험금	4,723	국민건강보험금 4,723천원
연금부담금 등	24,420	연금부담금 등 24,420천원
수 당	41,390	- 가족수당 1,440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14,438천원 - 정액급식비 4,680천원 - 명절휴가비 3,974천원 - 연가보상비 790천원 - 기술업무수당 16,068천원

####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구비		174,404	177,892	181,450	185,079	188,780	907,605
	소계(a)		174,404	177,892	181,450	185,079	188,780	907,605
	인건비(보수)		145,261	148,166	151,130	154,152	157,235	755,944
세출	보험료+연금 (사용자분)		29,143	29,726	30,320	30,927	31,545	151,661
	소계(b)		174,404	177,892	181,450	185,079	188,780	907,605
	□ 총 비용(a-b)							

####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구비)			174,404	177,892	181,450	185,079	188,780	907,605
합계			174,404	177,892	181,450	185,079	188,780	907,605

#### 6. 추가의견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분야 전문 인력(의사) 및 고용복지 분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 증원이 필요함.

####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국 총무과 이정왜
연 락 처	02-2670-33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02명”을 “1,405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1,375명”을 “1,37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05	1,405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00	1,400			
일 반 직	3급	1	1	-	-	-
	4급	8	6	1	1	-
	5급	65	33	2	12	18
	6급 이하	1,324	1,324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402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375명</u></p> <p>2. (생략)</p>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구의회 사무국</th> <th>보건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color: red;">1,402</td> <td colspan="4" style="color: red;">1,402</td> </tr> <tr> <td>정무직</td> <td>1</td> <td colspan="4">1</td> </tr> <tr> <td>일반직 계</td> <td style="color: red;">1,397</td> <td colspan="4" style="color: red;">1,397</td> </tr> <tr> <td rowspan="5"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일반직</td>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8</td> <td>6</td> <td>1</td> <td>1</td> </tr> <tr> <td>5급</td> <td style="color: red;">64</td> <td>33</td> <td>2</td> <td style="color: red;">11</td> <td>18</td> </tr> <tr> <td>6급 이하 소계</td> <td style="color: red;">1,322</td> <td colspan="4" style="color: red;">1,322</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2</td> <td colspan="4">2</td> </tr> <tr> <td>별정직 계</td> <td>4</td> <td colspan="4">4</td> </tr> <tr> <td>6급 상당 이하</td> <td>4</td> <td colspan="4">4</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02	1,402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397	1,397				일반직	3급	1	1			4급	8	6	1	1	5급	64	33	2	11	18	6급 이하 소계	1,322	1,322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p>제2조(정원의 총수) ----- ----- <u>1,405명</u> ----- ----- -----</p> <p>1. ----- <u>1,378명</u></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구의회 사무국</th> <th>보건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color: blue;">1,405</td> <td colspan="4" style="color: blue;">1,405</td> </tr> <tr> <td>정무직</td> <td>1</td> <td colspan="4">1</td> </tr> <tr> <td>일반직 계</td> <td style="color: blue;">1,400</td> <td colspan="4" style="color: blue;">1,400</td> </tr> <tr> <td rowspan="5"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일반직</td>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8</td> <td>6</td> <td>1</td> <td>1</td> </tr> <tr> <td>5급</td> <td style="color: blue;">65</td> <td>33</td> <td>2</td> <td style="color: blue;">12</td> <td>18</td> </tr> <tr> <td>6급 이하 소계</td> <td style="color: blue;">1,324</td> <td colspan="4" style="color: blue;">1,324</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2</td> <td colspan="4">2</td> </tr> <tr> <td>별정직 계</td> <td>4</td> <td colspan="4">4</td> </tr> <tr> <td>6급 상당 이하</td> <td>4</td> <td colspan="4">4</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05	1,405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00	1,400				일반직	3급	1	1			4급	8	6	1	1	5급	65	33	2	12	18	6급 이하 소계	1,324	1,324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02	1,402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397	1,397																																																																																																																																	
일반직	3급	1	1																																																																																																																																
	4급	8	6	1	1																																																																																																																														
	5급	64	33	2	11	18																																																																																																																													
	6급 이하 소계	1,322	1,322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05	1,405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00	1,400																																																																																																																																	
일반직	3급	1	1																																																																																																																																
	4급	8	6	1	1																																																																																																																														
	5급	65	33	2	12	18																																																																																																																													
	6급 이하 소계	1,324	1,324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